국회에서 의결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윤 석 열 인

2023년 4월 11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「 ᆼ . 국 무 위 원 여 성 가 족 부 김 현 숙 장 관

## ◉법률 제19339호

##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

제1조(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"형"을 "실형"으로, "끝나지"를 "끝나거나"로, "아니하거나 집행이"를 "집행이"로, "자"를 "사람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2조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종료되거나"를 "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
3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결격사유 중 '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'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.

<법제처 제공>